

# 온천전문검사 위탁운영절차 안내

2017. 1. 1부터 일부 변경시행되는 내용을 포함한 온천전문검사 위탁운영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며, 특히 정기온천자원조사 신청의 경우는 온천이용허가기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17온천업무편람」(2017. 1, 행정안전부)에서 발췌하였으며, 관련 근거 및 자료는 「2017온천업무편람」을 참고
- 「2017온천업무편람」 파일다운 : 협회홈페이지 → 정보광장 → 자료실

2018. 4. 2



<http://hotspring.or.kr/>

우)03173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701호(당주동, 세종빌딩)  
전화 02)720-5004 / 팩스 02)723-5003 / 이메일 hot\_spring@naver.com

# 온천전문검사 위탁운영절차

## □ 위탁운영(「2017온천업무편람」 187쪽)

### 2-1. 위탁의 대상

- 온천전문검사 : 온천부존조사,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자원 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수위변동실태 조사 등

### 2-2. 위탁운영 체계

-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이 온천전문 검사기관과 검사비용을 결정한 후 온천협회에 위탁
- 온천협회는 위탁받은 해당전문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의뢰받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약정기일내 검사보고서 초안 작성·제출
- 온천협회는 학술위원회 검토를 거친 최종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출
  - 최종 검사보고서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 및 한국온천협회의 직인을 병행 날인하고 학술위원회 검토서를 필히 첨부

## □ 검사비용

### ○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2017온천업무편람」 184~185쪽)

구분	2017년도 이후 검사비(원)			2011 ~ 2016년도 검사비(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온천부존조사 (1개공)	8,550,000	855,000	9,405,000	9,138,171
온천공검사 (1개공)	29,880,000	2,988,000	32,868,000	31,911,400
온천공재검사 (1개공)	25,440,000	2,544,000	27,984,000	27,169,146
온천공영향조사 (조사공 1개공, 관측공 2개공이하)	43,370,000	4,337,000	47,707,000	46,317,611
온천공영향조사 (조사공 1개공, 관측공 3개공이상)	49,720,000	4,972,000	54,692,000	53,104,491
온천자원평가조사 (발견신고공 제외, 2개공 기준)	148,060,000	14,806,000	162,866,000	158,125,074
정기온천자원조사(온천자 원재조사) (1개공, 양수시험, 온천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11,230,000	1,123,000	12,353,000	12,000,000
정기온천자원조사 (1개공, 이용량 수위관측, 온 천영업을 하는 경우)	8,980,000	898,000	9,878,000	9,600,000
정기온천자원조사(전체지구)	304,280,000	30,428,000	334,708,000	324,968,198

※ 2017년도 이후 검사비의 상한은 위와 같으며 그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금액으로 함.

### ○ 계약조건(「2017온천업무편람」 184~185쪽)

- ※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중모터펌프 등 설치, 발전기 등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이며, 의뢰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수행과업에 따라 협의 산정
- ※ 장비교체 · 동력사용 · 수위관측관설치 등 조사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의뢰자 부담
  - 동일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조사공이 있는 경우 두 번째(2번째) 조사공 부터 조사비를 20% 이내 감할 수 있음
  - 온천자원관측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비용의 20% 이내 감할 수 있음

### ○ 정기온천자원조사보고서 제출시기(「2017온천업무편람」 169쪽)

- 제출시기 : 온천이용허가 만료일 30일 이전

## □ 검사항목

### ○ 온천부존조사(「2017온천업무편람」 171쪽)

토지를 굴착하기 전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로서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 경우에는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부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함께 첨부

### ○ 온천공검사(「2017온천업무편람」 56, 172쪽)

신규 온천발견 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해 온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수위강하 및 성분 등을 평가. 검사항목으로는 조사공 내의 지하수위 관측, 온도 및 물리검층, 양수 시험 및 성분분석 등이다. 온천공검사의 검사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한다.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서류 접수시 온천공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온천 전문검사기관이 온천발견을 위한 시추·굴착을 하지 아니한 온천전문검사 기관인지 확인하여야 함 (※온천부존조사를 실시한 검사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온천공 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 ○ 정기온천자원조사(「2017온천업무편람」 179쪽)

온천지구(구역) 지정 5년이 경과된 후 최초 온천이용허가를 득할 때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로서 기존 온천원보호 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최초 온천이용허가일로 기준하여 동일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모든 온천공을 함께 조사한다. 온천원보호지구의 조사기간은 10개월 이상으로 하며, 온천공보호구역의 조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 기타(기준추가)

검사명	세부내용	검사 내용
온천공재검사	온천발견신고 완료이후 5년초과하여 온천이용허가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온천공검사비 중에서 물리검층 제외
온천자원재조사	온천이용허가이후 5년초과하여 정기온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정기온천자원조사비에서 장기양수시험 포함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2017온천업무편람」 18~19쪽)

(2017. 1. 1 현재)

연번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비고
1	한국농어촌공사	정 승	전남 나주시	'00.10.10.	061-338-5797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대전 유성구	'00.10.10.	042-868-3085
3	한국중앙온천연구소	이종태	서울 금천구	'00.12.28.	02-2027-3470
4	(주)하나 엔지니어링	이정락	경기 안양시	'00.12.28.	031-345-0507
5	(주)한국건업엔지니어링	성종수	경기 광명시	'00.12.28.	02-894-2472
6	(주)세기종합기술공사	민봉기	세종특별자치시	'00.12.28.	044-863-1025
7	중앙컨설턴트(주)	김해종	서울 강남구	'08.8.26.	02-2156-6031
8	(주)옥수개발	이영일	서울 송파구	'12.7.23.	02-412-8944
9	(주)진산	김봉상	제주특별자치도	'12.12.3.	064-756-8868
10	(주)지오엠	김근수	경남 김해시	'15.2.6.	055-327-2709

